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그 동안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용자지원 해오던 새마을 소득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가구, 마을, 단체로 구분하던 것을 농어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작목반 등으로 개정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하였으며
- 용자신청시 과도한 연대보증의 요구, 관계공무원의 자금관리상태의 확인 등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 차원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용자 대상자를 가구·마을·단체로 하던 것을 농어가·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·작목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5조)
- 기금의 용자신청시 통·리 개발위원중에서 3인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던 것을 재산세 납부금액 2만원이상 관내거주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.(안 제8조)
- 관계공무원이 용자받은 자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0조)

□ 검토보고

-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그 동안 5억 5천만원의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용자대상을 가구, 마을, 단체로 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마을단위의 소득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는 농어가, 영농조합법인, 영농회사법인, 작목반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- 사업자금의 용자신청시 통·리 개발위원중에서 3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던 것을 재산세 납부금액 2만원이상인 자로 2인 이상이 연대보증으로 가능토록 한 것과 관계 공무원이 자금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하던 것을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토록 한 것 등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